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지 제20호서식]

공 고 문

공 고 제 호

확인서 발급 신청인	성명(법인명) 정효순	생년월일(등록번호) 64. 12. 07.
	부동산의 표시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347-1	
	취득사유 증여	
	공고기간 2021년 6월 24일 ~ 2021년 8월 23일 (2개월)	
대장상 소유자	성명(법인명) 신복례	생년월일(등록번호) 29. 4. 10.
등기 명의인	성명(법인명) 정효순	생년월일(등록번호) 64. 12. 07.

위 부동산에 대하여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23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유 의 사 항

1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2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정읍시 공고 제2021-1008호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·읍·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·면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24일

정 읍 시 장

1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2. 공고기간 : 2021. 6. 24. ~ 8. 23.(2개월)
3. 기타사항
   1)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2)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4. 문의전화 :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(☎ 063-539-5881,5882,5883,5884)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공고대상 목록

연번	신청인		대장상 소유자	등기 명의인	부동산의 표시			취득 사유	공고기간	비고
	성명	생년월일			소재지 및 지번	지목	면적(㎡)			
1	정효순	64. 12. 07.	신복례	정효순	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347-1	대		증여	21. 6. 24. ~ 21. 8. 23. (2개월)	